

남편의 약혼발표 보도는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Cassidy v. Daily Mirror Newspapers, Limited

판결문 (1929, 제 2 고등법원)

(판결요지)

피고들은 「경마주인 코리건씨와 X 양이 약혼을 발표했다」는 기사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신문에 보도했다.

원고는 코리건씨의 법적인 아내였고 그녀의 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심판사인 스크루톤 판사 (Scrutton L.J.)와 러셀 판사(Russell L.S.)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그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심원의 평결 역시 그 보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도덕성에 대한 비방의 뜻을 내포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어 판사의 의견은 이와 다름)

Capital and Counties Bank v. Henty 사건에서 브레트 판사(Brett L.J.)는 선의로 한 진술에 명예훼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유로 고소될 경우,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데 이는 1심 맥카디판사의 판결근거와는 다른 것 이었다.

맥카디 판사(Mccardie J.)의 판결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이유)

원고인 캐시디 부인(Mrs. Midred Anna Cassidy)은 경주용 말의 주인이며 한때 멕시코 군대에서 장군으로 지낸 적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 에드워드 캐시디씨(Kettering Edward Cassidy)-혹은 미첼 데니스 코리건(Michael Dennis Corrigan)으로도 알려져 있는-의 법적인 아내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원고와 그녀의 남편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피고가 1928년 2월 21일자 데일리 미러(Daily Mirror,) 지에 『오늘의 화제, 남 · 여 그리고 세상만사에 대한 보도와 논평』이라는 머리기사 밑에 전술한 K.E. 캐시디와 익명의 X 양의 사진과 「약혼을 발표한 경마주 코리건씨와 X 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보도로 인해, 캐시디가 원고의 남편이 아니며 결국 캐시디 부인과 캐시디 씨는 부도덕한 동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또 일부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그 보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런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사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그 기사와 사진은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실제로 진실이었다고 맹세했다. 더구나 피고들은 원고가 K. E.캐시디의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혼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재판에서 원고는 자기의 지인 3 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그들은 정초에 원고에 대하여 경의를 가지고 친구로 대하였으나, 그 보도를 보자 원고가 자기들을 속이고 캐시디의 정부로서 동거하면서 진짜 법적인 아내인 척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피고들은, 1928 년 2 월 18 일 허스트공원에서 N.I.P.A. (News illustrations Press Agency) 회원인 리차드슨(Stanley Ernest King Richardson)이 K.E. 캐시디와 X 양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리차드슨은 전에도 그 두 사람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날 캐시디는 리차드슨에게 자기는 X 양과 약혼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리차드슨이 사진을 찍고 약혼발표를 해도 좋으냐고 들었더니 캐시디는 좋다고 하면서 예전에 찍은 사진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 찍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X 양을 불러 같이 사진을 찍고 X 양의 면전에서 그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게 그녀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리차드슨은 사진과 함께 설명기사를 신문사에 보도하도록 보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대로 보도한 것 뿐이었다.

원고는 그 신문을 보고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신문사의 가십 편집자를 대표하는 서명이 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플리트 가에 있는 News Illustrations Press Agency 가 허스트 공원에서 찍은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 설명은 계속되길, 코리건 씨를 알고있는 그 에이전시의 정규 경마 사진사가 그 사진을 적었고 코리건 씨로부터 직접 약혼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고는 변호사와 상의하였고, 변호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불쾌함을 표시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원고의 변호사는 답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우선 보도로 인해 괴로움을 끼친데 대한 유감의 뜻과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코리건 씨와 X 양이 사진을 찍을 때 코리건 씨가 직접 자기들의 약혼에 대한 얘기를 사진사에게 하고 또 발표하여도 좋다고 명백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고객(사진사의 입장에서)인 신문사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그것을 받아서 선의로 보도한 것 뿐이다. 』

1 심판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발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만약 그 보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원고의 도덕성에 대한 비방의 뜻을 표현했다면 평결은 원고 승소 이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승소의 평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원고승소 평결을 내릴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두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각각 37 파운드 10 실링씩 손해배상 받은 것을 고려하며 그 상황에서 적절한 손해배상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원고승소의 평결을 내려 피고에게 5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항소인측 변론)

1 심판사는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의미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였다. 그 보도에는 원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그녀를 암시하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오직 캐시디(Cassidy)와 원고가 결혼했다는 외부적 사실이 알려진 상해에서 그 보도가 나갔다면, 그 보도는 원고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항소인들은 몰랐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혼했다는 발표 그 자체는 아무런 명예훼손의 의미가 없다. 그러한 선의의 발표가 명예훼손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적 사실이 알려진 경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부적 사실이 명예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도를 한 사람에게도 알려졌어야 한다. Capital and Counties Bank v. Henty 사건에서 브레트 (Brett) 판사를 통해 블레이드번(Bladeburn)경은 상원의 상고심에 있어서 위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하여 그 사건에서 지고들이 보낸 회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이유의 하나로서 피고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West of England Bank 의 파산을 알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설사 항소인이 캐시디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의 약혼 발표가 그 아내의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계획했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혼을 약속했을 수도 있다. 어떤 글이 명예훼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Stubbs, Ltd. v. Russell 사건에서의 소판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유념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그 말이 과연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혹은 본질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의미인가? 아무리 그 해석이 곡해된 것이고 부자연스럽다 할지라도 특정인이 그 말에 특정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의 검토를 한다면 커다란 오류와 불행을 낳을 것이다.』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은 각기 원고를 몇 년 동안 알아왔고 또 그들은 모두 원고의 인격에 경의와 찬양, 그리고 남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들은 신문보도를 보자 즉시 원고가 그 동안 부도덕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속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비합리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의 의미를 알아챌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항소인을 패소 시키기에 부족하다.

(피항소인측 변론)

항소인측 주장은 Morrison v. Ritchie 사건에서 반복되었으며 대법원 민사부에 의해 폐기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일심각사가 피고의 신문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결한 것은 정당했다. 경마주 코리건 씨와 X 양의 약혼 보도를 읽고 그것이 아마도 코리건 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든가, 혹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결혼 약속을 X 양과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소인 측 변호사들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코리건 씨가 독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그 보도는 독신경마주 코리건 씨가 X'과 약혼한 것이라는 보도와 다를 바가 없다. 기혼자를 두고 독신이라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독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어떤 특권의 부여와 의무의 부과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은 더 나아가 그의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도 된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법관청과 의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부부를 이혼 시키지 않는 한 남편과 아내는 동일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부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가 그들의 신분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항소인측이 「캐시디는 아내가 없다」고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캐시디 부인뿐만 아니라 캐시디 자신까지도 명예훼손시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그들이 한 행동은 위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스크루톤 판사의 판결)

캐시디 부인은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코리건과 동거한 부도덕한 여자인 양 보도 했다는 이유로 그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피고측 법률고문 변호사는 그 기사가 명예훼손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원고가 자신은 코리건씨와 결혼했다고 진술했고, 후에는 결혼증명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인들은 뭔가 잘못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 원고의 결혼사실을 부정했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이다 (1)당해 보도가 명예훼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2)캐시디 부인의 친구들이 보도를 보고 그녀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추측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는 알지 못하였는데도 피고는 그러한 추측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해 보도는 직접 원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A에 대한 보도가 간접 적으로 B를 명예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헨터 (Henty) 사건 항소심에서 코튼(Cottern)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보도된 말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말에서 어떤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 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보도를 한 사람은 그 말뜻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이나 의미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본사건의 당해 보도가 코리건 씨가 독신이라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코리건 씨가 결혼약속을 미끼로 여자를 유혹하거나, 혹은 이혼 후에 결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나의 견해는 유혹자가 그의 거짓 발표를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배심원들은 그러한 의미는 배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도의 의미가 다양하여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선의인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에 붙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의 당해 보도는 「코리건 씨는 독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원고가 코리건 씨의 아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보도되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도에서 소위 코리건 부인은 실제로는 코리건 씨와 부도덕한 동거생활을 한 것이라는 추측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배심원이며, 나는 거기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점에 관해서는 본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는 몇몇 독자들이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추측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E Huton & Co. v. Jones 사건이후로, A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의미를 갖는 보도를 한 사람이 「나는 A에 관해 들어 본적도 없고 그를 해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가 직접 간접적으로 A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 A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는 그 기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명예 훼손적 추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신문의 합리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신문발행인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보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한 경우, 만약 조사를 하였더라면 보도가 허위이며 명예훼손과 부당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판명되었으면, 신문발행인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멕시코 군대의 장이었던 코리건 씨」라고 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뉴스원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먼저 보도를 하고 나중에 사실조사를 하면 아마도 독자들에게 흥미를 루거나 최선의 보도로 보일지도 모른다. 먼저 조사한 후에 보도하는 것이 늦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과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 나의 의견으로는 항소는 소송비용과 함께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어 판사의 견해)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그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소상에서 설명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 그리히 그 의도란 기자의 생각에서 판단할 때의 의도가 아니라, 그 기사자체로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내가 판단하건데 원고의 지인들이 그녀가 정부로서 코리건 씨와 동거한다고 속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그 기사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항소인이나 당 법정이 일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점이 없었으며,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도 그 사에는 어떠한 명예훼손을 구성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일심판사는 본 사건을 계심원의 평결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어야만 했다고 본다.

나의 판단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명예훼손적인 신문보도가 언급한 사실때문에 증인이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추측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문제된 기사가 명예훼손의 의미가 있다는 판결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배심원은, 피고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기사에 명백히 명예훼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한다.

내가 일심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E. Mutton at Co. v. Jones 사건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헨터 사건 판결에서 브레트 판사가 규정해 놓은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에 대한 선의의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해석하기 위해 어떤 외부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그 외부적 사실은 그 기사 작성자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내가 이해하기에 문제가 된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사람들은 코리건 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다.

헨터사건에 대한 상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다수 판사들의 다수 견해가 항소심에서의 브레트판사의 견해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본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블랙번 판사 (Lord Black burn)는 브레트 판사의 견해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다.

『보도방법상의 특권, 그 기사를 보도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어떤 일들, 보도자가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과는 관계없이, 독자가 기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그 보도 기사가 명예훼손적 비난의 뜻이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사건에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인 말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내 판단으로는 피고들은 승소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기자의 진의에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말을 기자가 사용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페어웰 판사가 지적한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는 누군가의 명예에 해가 된다는 것을 피고가 알고 있거나 의도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경멸이나 조롱을 위해서든 아니든 간에 피고의 표현이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원고를 두고 표현한 것임을 알고 또 그 표현이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주의로 이루어졌을 때에 입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피고의 보도기사는 명예훼손의 의미가 없고 따라서 판사는 배심원들이 피고승소의 평결을 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법률에서 정의 혹은 공평과 같은 합리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규칙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경우, 때때로 그것은 불완전한 모습이 되기 쉽다.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E. Mutton & Co. v. Jones 사건과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 나의 판단으로는 판사가 이 사건을 배심원의 평결에 붙일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승소로 판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인의 항소는 정당한 것이다.

(러셀 판사의 견해)

본 항소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진과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일심판사는 그 사건을 배심원의 평결에 붙여 피고들이 사실상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는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배심원들은 피고에게 500 파운드 손해배상을 명하는 원고승소의 평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1)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에 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2) 판사가 배심원들을 잘못 이끌어 간다. (3) 손해배상 액수가 과다하다.

나의 의견으로는 (2), (3)의 이유 즉 판사가 배심원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과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판결과 평결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인 (1)의 항소 이유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피고들은 자기들의 보도내용이 언뜻 보기에 원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예훼손적 상황에 관한 기사가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도될 수도 있다.

본 사건에 있어 맥카디(MaCardie) 판사는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내 생각으로도 그러한 견해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 Mutton & Co. v. Jones 사건에서 대법관(Lord Chancellor)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은 그 상황을 알고있는 다른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한 뜻을 가지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는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를 비방할 뜻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패소를 면할 수 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달려있다. 본 사건에서의 보도내용이 「코리건 씨는 독신자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일란 결론을 짓는다면, 본인 생각에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지의 여부는 배심원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결정한다.

선의를 보도결과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고들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을 공감한다 하더라도 코리건 씨가 독신이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은 허위를 적시한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들은 발표 전에 진술의 진위를 위한 조사나 입증을 위하여 시간과 경비를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허위의 발표를 하지 많았다면, 지금 손해배상의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업방식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피고들은 1928년 2월 21일 당시 코리건 씨가 독신이라는 발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 셈이다. 그 발표는 허위이며 배심원들은 그 발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평결했다. 그 보도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많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기각이라는 스크루톤 판사 의견에 동의한다.

최종판결 : 항소기각